

인삼제품 수출을 위한 준비사항 및 관련법규

-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FDA 규정에 맞는 제품 준비 및 라벨링이 반드시 필요함
 - 미국은 “위생허가” 제도는 아니나 제조공장 FDA 등록 및 저산성식품의 경우 SDI NO. 발급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, FDA 규정에 맞지 않는 제품 수출시 통관 보류 및 반송처리 가능성이 높아 규정 맞추어 제품 생산 및 라벨링 필요
 - 관련법규
 - 미 연방 식품의약법(Federal Food, Drug, and Cosmetic Act as amended)
 - 공정포장표시법(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)
 - 수입우유법/치환유법(Import Milk Act/Filled Milk Act)
 - 21주제 CFR, 특히 파트 1, 하부파트 E수입과 수출(Title 21 CFR, especially Part 1, Subpart E-Import and Exports)
 - 보건 및 안전을 위한 방사능 통제법(Radiation Control for Health and Safety Act)
 - 연방 부식성 독 법(Federal Caustic Poison Act)
- 특히, 인삼(홍삼) 함유량이 높아 건강보조식품으로 유통되는 제품(예 : 홍삼정, 캡슐, 환제 품 등)은 건강보조식품(Supplement)로서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(DSHEA)에 부합하도록 해야 함
- 미국의 수입제도(p. 42), FDA 공장등록(p.43) 및 SID No. 발급 해당 품목 구분 및 발급방법(p.121~122), 라벨링 방법(p.122) 등은 『미국 식품 수입 규정 및 안전성 관련 제도』 참고